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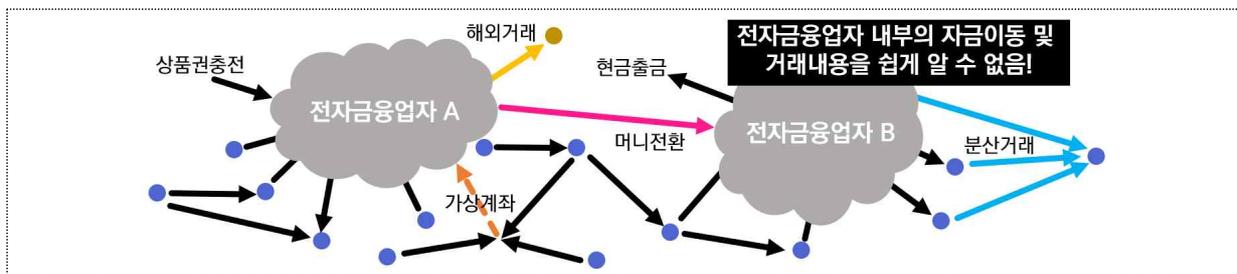


보도	2023.9.6.(수) 조간	배포	2023.9.5.(화)	
담당부서	자금세탁방지실 자금세탁방지검사2팀	책임자 담당자	실장	이재석 (02-3145-7500)
			팀장	김혜선 (02-3145-7495)

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.

I 배경

- 최근 전자금융업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 위험요인 및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.
- 주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점검과 현장검사* 결과,
 - *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 서면점검('23.3월) 및 5개 대형사 현장검사('22.8월~'23.6월)
 -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키므로 자금의 이동경로 추적이 어렵고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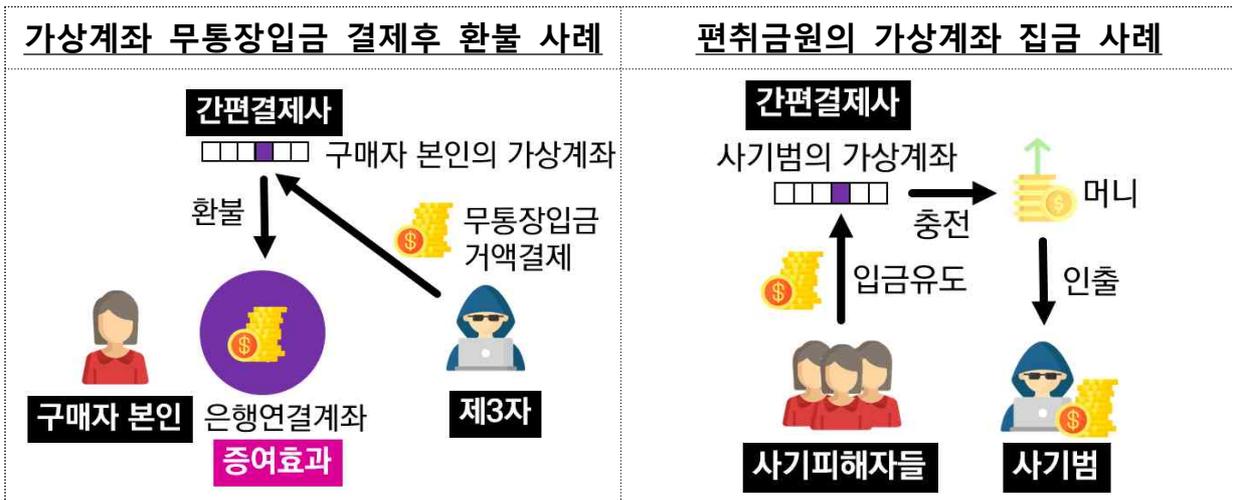
-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(200만원)와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며,
-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이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II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거래 유형

※ 점검 및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발생 가능한 자금세탁 위험거래를 유형화

유형1 가상계좌를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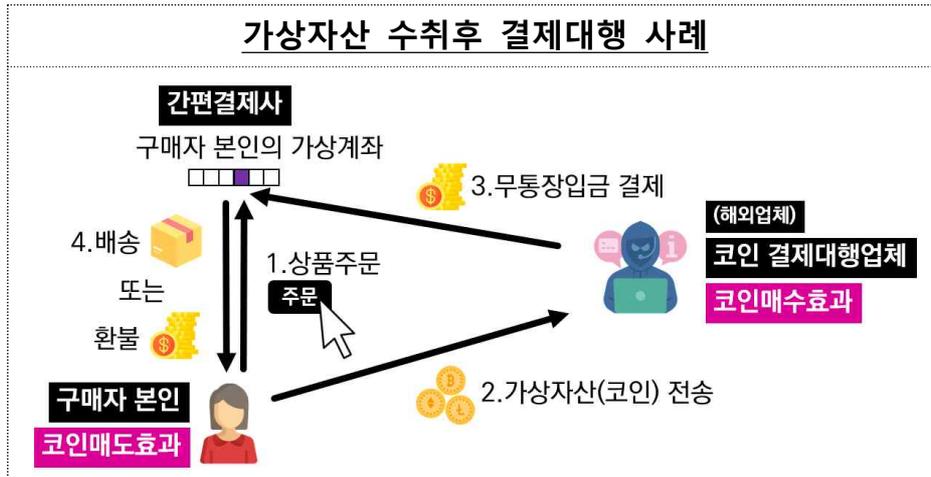
- 전자금융업자가 구매 또는 충전용으로 고객에게 할당하는 가상계좌는 누구나 입금할 수 있고 실입금자의 실명 및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
 - ① 제3자가 구매용 가상계좌에 무통장입금하여 거액의 물품 구매 후 본인의 은행계좌로 환불받는 방식 또는
 - ② 사기 피해자들이 머니충전용 가상계좌로 입금한 편취금원으로 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환급받는 방식 등으로
 - 제3자의 금전을 수취하는 유형의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.



유형2 가상자산의 편법적인 현금화 위험

- 가상자산을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, 전자금융업자가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

- 전자금융업자와 제휴관계가 없는 코인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물품 환불을 통해 현금화하는 등
-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 트래블룰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금 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.



유형3 구매행위를 가장한 자금세탁 위험

- 전자금융업은 기타 다음과 같은 자금세탁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.
 - ① 구매의 실질이 없는 자가매출, 위장가맹점에서의 반복결제 등 허위매출 방식 또는
 - ②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 등



III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체계 구축 현황

- '19.7월 전자금융업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도입되었으나,
 -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IT업체 기반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일반 금융업권 대비 AML 업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 - 특히, AML 업무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낮고, 전문인력·조직 부족, 전사적 자금세탁위험평가 및 업무체계 미흡 등 전반적인 AML 내부 통제기능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

전자금융업자 AML 주요 미흡사항

항목	세부 내용
① 내부통제체계 관련	①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② 전사적 자금세탁위험평가 설계·운영 ③ 외부전문가를 통한 독립적 감사 ④ 전담조직의 전문성 및 규모
② 고객확인 관련	① 비대면 고객확인·검증·재이행 ② 기존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③ 고객위험평가 모형 설계·운영
③ 의심거래보고(STR) 관련	① 의심거래 추출기준 설계 및 점검 ② 의심거래 보고여부 검토 및 보고체계 수립·운영

IV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.
 - 금번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약속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관리하는 한편,
 - 「전자금융업 AML 내부통제 워크숍」 개최(9월 예정)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AML 인식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, 전자금융업에 특화된 AML 체계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